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內事件

實用新案登錄無效

〈大法院 第3部 判決〉(1980. 1. 13)

裁判長：大法院判事 김 중 서

關與法官： 안 병 수·유 태 흥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이 중 안 (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1-23)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：오 기 원 (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186-3)
3. 原 審 決：特許廳 1980. 5. 28字, 1978年 抗告審判(당)第180號 審決
4. 主 文：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5. 理由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第1點,

原審이 確定한 事實에 의하면 審判請求人은 高壓호오스製造業者로서 營業中 이 事件 審判繫屬中인 1978. 2. 26日에 營業不振으로 廢業하였다는 것이다. 살피건대 實用新案의 無效審判을 請求할수 있는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當該實用新案權者로부터 그 權利의 對抗을 받을 念慮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現在 業務上 損害를 받거나 後日 損害를 받을 虞려가 있는 者를 包含한다 할 것 인바(大法院 1968. 2. 28 宣告, 62후 14判決 및 1974. 3. 12 宣告, 73후 37判決 參照) 이 事件無效審判을 請求함에 있어서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한 위와같은 營業의 廢止事實 만으로는 利害關係人이 됨에 妨害가 될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같은 趣旨에서 審判請求人을 利害關係인는 者로 본 原審決은 正當하고 거기에 어떤 違法事由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論旨는 理由없다.

第2點,

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本件 登錄第10565號 實用新案과 그 登錄 出願前에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이 記載된 日本公開實用新案公報昭47-34117號考案은 공히 호오스內面에 插入된 자바라관 內面을 合成樹脂로 密着하여 成型시킨 構造가 完全 同一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前者는 자바라관의주면을 피브이씨로 密着시켜 一體로 한 반면 後者는 자바라관의주면에 프라스틱皮膜을 입혀 內部에 空間을 形成한 差異는 있으나 자바라관의 內外面을 피브이씨로 密着시켜 일체로 形成함은 오히려 호오스의 柔軟性을 低下시킬뿐이고 새로운 特徵이라 볼수 없다고 說示하였는바 記錄에 비추어 살피건대 原審의 위 判斷過程을 그대로 認定할수 있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法理誤解나 類否判斷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論旨도 理由없다.

이에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

關與法官의 一置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一 參 考

抗告審判

1978年 抗告審判(당) 第180號
抗告審判請求人：오 기 원
被抗告審判請求人：이 중 안
위 當事者間의 1977年 審判第384號(登錄實用新案 第10565號 無效審判) 審決不服 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：本件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수 없다.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審 決

1977年 審判第384號
審判請求人：이 중 안
被審判請求人：오 기 원
위 當事者間의 登錄第10565號 實用新案의 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判한다.

主文：登錄 第10565號 實用新案은 그 登錄을 無效로 한다.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